

문서 관리번호	H12300019975-20230825-003256
최종 수정일	
문서 관리부서	인재운영팀

현대제철(주) 차별 및 괴롭힘 예방정책

제 · 개 정 이 력	차수	제·개정일	주요 내용
	0	2023년 8월 25	초도 제정

[담당]

인재운영팀

[승인]

경영지원본부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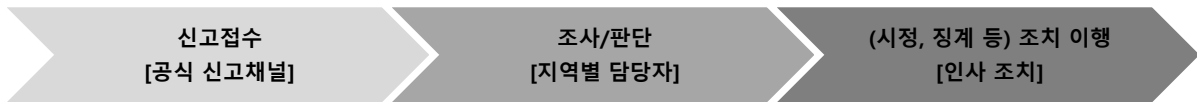
가. 제정목적

현대제철은 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·차별과 관련한 이슈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사의 모든 임직원이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해당 정책을 수립한다. 또한 당사의 모든 자회사, 합작 투자, 공급망 및 계약업체 등이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. 현대제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남녀고용평등법’),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차별 및 괴롭힘과 관련한 법률을 준수한다.

나. 정의

- **(괴롭힘 금지)** 회사 내 예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**(성희롱 금지)**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**(차별 금지)**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직원의 성별, 인종, 민족, 국적, 종교, 장애, 나이, 정치적 견해,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
다. 발생 시 조치



[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및 차별 발생시 조치 프로세스]

- 직장 내에서 괴롭힘·성희롱·차별 등이 발생한 경우, 회사는 그 내용을 신고 받는다. 이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.
- 직장 내에서 괴롭힘·성희롱·차별 등을 신고한 사람이나 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- 직장 내에서 괴롭힘·성희롱·차별 사실이 확인되면, 회사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행위자에게 필요한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
라. 비밀유지

현대제철은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·차별 조사 과정에 참여한 임직원은 조사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/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다. 또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, 필요할 경우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.

마. 교육 및 확산

현대제철은 임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및 차별 등의 금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위자에게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 또한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·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존중 조직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.

바. 무관용 정책

현대제철은 상호 존중과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괴롭힘 및 차별등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. 또한 직장에서의 모든 종류의 괴롭힘·성희롱·차별 등 또는 기타 불법적인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시정 조치 및 인사 조치를 취한다.